

축산물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

-농림부-

농림부는 지난 9월 16일 「축산물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본고는 축산물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에서 양돈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1. 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

가. 사육단계

■ 주요 가축질병 근절 추진

가축질병근절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동물약품 사용감소를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필수적임.

우리나라는 아직도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뉴캣슬병 등이 발생하여 근원적인 가축질병 근절대책이 필요.

※ 일본은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 청정지역 선포를 목표로 박별대책을 추진중이므로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서도 질병근절 필요.

■ 동물약품 허약기간 준수 및 성장단계별 사료구분급여

약제, 사료첨가제별로 유효성분, 주효능, 대상가축,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금지(허약)기간을 정하여 규제.

생산농가가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고·교육을 통해 안전성에 대한 인식강화 필요.

나. 도축단계

■ 유행성잔류물질검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축단계에서의 검사가 매우 중요.

도축장 검사인력과 장비 및 검사기술 확보 필요.

도축단계에서의 검사결과가 사육농가에게 feed back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도축과정에서의 위생수준 향상

비위생적인 재래식 시설의 현대화, 도축과정별 오염요소 점검 및 요염원 제거노력 필요.

■ 절박도축제도 개선

질병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도축장으로 운송되기가 어려운 경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개업수의사의 진단아래 현장에서 도살·방혈한 후 도축장으로 운송하여 해체토록 절박도축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절박도축제도를 이용하여 진단서를 허위로 첨부하는 사례가 밝혀졌고 운송과정에서도 장시간 소요로 쇠고기가 변질될 우려가

〈표 1〉 돼지 전염병별 주요 증상

질병명	법정전염병	주 요 증 상
〈돼지〉	제1종	○ 돼지의 급성열성전염병으로 전파성이 극히 강하고, 고열 및 기면상태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높아 감염시 농가에 경제적 손실이 큼(2-1.5-1)
○ 돼지콜레라 ○ 오제스키병	제2종	○ 접촉 또는 공기등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어미돼지는 사산 또는 유산을 하는 등 번식장애를 나타내고, 새끼돼지는 설사, 구토를 하고 신경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이 높은 전염병임(3.5-2-1)

* ()는 피해최소화단계, 균절추진단계 및 조절확인단계 기간(년)임
-돼지콜레라·오제스키병은 '96. 7월부터 피해최소화단계 추진

있으며 특히 죽은 소의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다. 축산물유통구조개선 및 부정축산물 단속 추진

냉장육·부분육·브랜드육 유통체계 구축으로 국내산 육류의 상품성 및 위생수준 향상.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 구축 둔갑판매·밀도살 등 부정유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추진

2. 주요 가축전염병 균절대책 추진

가. 추진배경

매년 가축전염병 피해방지를 위한 방역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는 계속 발생 특히 사육규모확대와 집단화로 피해규모 대형화 추세.

생산비 절감외에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가축전염병 균절은 꼭 필요함.

나. 주요 가축전염병 균절 목표년도 설정 및 단계별 추진

전염병별로 피해최소화 단계(전두수 예방접종), 균절추진 단계, 균절확인 단계로 구분하여 대책 추진.

-돼지콜레라: 2000년까지 균절, 2001년 청정화 선포

-뉴캣슬병, 추백리, 가금티푸스: 2001년까지 균절

-돼지오제스키병, 우결핵, 부루세라병: 2002년까지 균절

※ 질병별 주요증상: 〈표 1〉

다.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

(1) 축산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을 편성 운영하여 농가의 참여를 통해 실천하는 방역사업으로 추진

지역축협 주관으로 축산농가, 행정기관, 축산단체, 수의사들이 참여하는 지역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동방역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가가 직접 방역에 참여해 나가는 지역단위 자율방역을 정착시켜 방역효과를 극대화함.

-'97. 1월 운영을 목표로 현재 시·도 의견수렴 및 운영요령 제정중

※ 중앙에는 축협중앙회 주관으로 중앙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방역사업을 지원함.

지역공동방역사업단 책임아래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주사 및 겸진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함.

-돼지콜레라, 뉴캣슬병등 주요질병 예방접종

확대

– 공동방역 참여농가 및 우수시군에 대한 정책자금 차등지원방안 강구

(2) 가축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알아내기 위한 체제를 구축

현재 신고시점에 관계없이 시가평가액의 80%를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조기 신고시는 100%, 자율신고시는 80%, 자체신고시는 60%로 차등지원도록 함.

조기 신고농가에게는 당해 질병에 대한 공수의 진료, 소독·예방 약품등도 무료로 지원함.

전염병 발생시 미신고자·검사거부자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로 부과등 처벌을 강화해 나감.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 조속 추진

(3) 신고·발생된 질병의 정확·신속한 진단을 위한 병성감정 및 검진업무를 강화

국립수의과학연구소(농진청),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병성감정전담반을 설치하고 질병진단용 특수차량·장비를 국고예산으로 확보해 줌.

전국의 주요 수의과대학(10)에 검사재료비, 진단액등을 지원하여 민간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적극 활용함.

도축장·도계장에 출하되는 가축의 혈청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도축출하시 출하농장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함.

(4) 가축질병 전파차단을 위한 지도 강화

위생관리가 우수한 종돈장·종계장을 지정하는 『위생방역관리우수농장 인증제』를 실시하여 종축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근원적으로 차단(농림부고시 제정·시행 '96. 9. 2).

등록된 종돈·종계장중 주요질병발생사실이 과거 1년간 없는 농장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농장으로 인증하고 홍보, 상표 표시등을 허용토록 함.

축사출입차량, 기구, 사람에 대한 소독실시 의무화도 병행 촉진.

※ 가축전염병근절대책 추진관련 '97 예산확보 확대

– ('96) 5,684백만원→('97) 예산(안) 11,719(206%증)

3. 축산물안전성 검사 강화

가. 도축단계에서의 유해성잔류물질 검사

(1) 대상가축 및 시기

'96. 7월부터 쇠고기·닭고기, '97. 1월부터 돼지고기에 대한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잔류물질검사 실시

■ 항생물질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 일반생물체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정제하여 만든 약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보건복지부 고시)에 20종의 항생물질에 대해 최대 잔류허용한계를 설정하고 있음.

■ 합성항균제

기능은 항생물질과 같으나 여러가지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약제.

22종의 합성항균제에 대해 최대 잔류허용한계를 설정하고 있음.

■ 최대잔류허용한계(Maximum Residue Limit, MRL) 설정 방법

평생 섭취하여도 인체에 무해하고, 약제내성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안전 섭취 허용량임.

동물실험을 통해 최대무작용량(No Observed Effective Level, NOEL)을 찾아내고 여기에 사람과 실험동물간 차이계수 10과 개체간 저항력 차이계수 10을 곱한 1/100을 안전계수(약제에 따라 1/2,000까지 설정)로 곱하여,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설정하고 체중 및 일일 섭취하는 식품량 등을 감안하여 최대잔류허용한계를 계산.

(2) 검사물질 및 잔류기준

〈표 2〉 검사물질 및 잔류기준

잔류물질종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단위 : ppm) 비 고
항생 물질	암피실린	0.01	0.01	—	
	옥시테트라싸이클린	0.1	0.1	0.1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0.1	0.1	1.0	
	테트라싸이클린	0.25	0.25	0.25	
합 성 항균제	페니실린	0.25	0.25	불검출	
	설파디메톡신	0.1	0.1	0.1	
	설파메타진	0.1	0.1	0.1	

(3) 검사방법 및 절차

도축장에 계류중인 소가운데 의심가는 소 또는 무작위 추출 소에 대해 생체검사(혈액검사)를 한 후 양성 판정된 소에 대해서도 도축을 연기도록 하되 금년은 실시초년도로서 생체검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양성축도 도축하여 지육검사를 실시하고 생체검사와 별도로 지육을 샘플링하여 검사.

지육에 대한 1차 정성검사결과 양성판정된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실시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식용공급을 금지.

다만, 금년에는 1차 정성검사만을 우선 실시해서 양성판정된 소의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동 농장에서 이후 출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초과시 식용공급을 금지토록 함.

절박도축·긴급도축·주사등에 의한 화농부위가 있는 지육은 정성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정량검사를 실시함.

(4) 휴약기간 준수 및 성장단계별 사료 구분급여에 대한 집중 계도·교육실시

축산물중 유해물질잔류는 가축의 사육단계에서 발생하므로 동물용의약품이나 사료첨가물의 사용방법(대상동물·용법·용량·휴약기간 등)을 규정대로 정확하게 이행하면 잔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농가에게 집중 홍보·교육

※ '96. 7월 안전성 검사실적

— 쇠고기 1,295건중 19건 양성판정(1.47%), 닭고기 1,178건중 검출무

나.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도입 육류중 미생물검사 실시

(1)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제도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판매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찾아 내어 제거해 나가는 식품안전성 확보방안.

사육단계, 도축·가공단계, 유통단계로 크게 나누고 다시 세부 위해요소를 발굴하여 제거하는 동 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보완 발전시킴.

— 사육단계 : 사육시설, 사료급여, 개체관리 등

— 도축·가공단계 : 운송·하차, 도축과정, 절단·포장 등 가공

— 유통단계 : 운송방법(냉장, 현수), 저장온도, 기구소독 등

(2) 육류중 미생물검사 실시

도축·도계장에서 작업과정별로 육류를 채취하여 미생물오염도를 조사하여 과정별 오염원을 추적·차단하므로써 작업위생상태 개선.

시·도별로 장비구입이 완료('96. 420백만원/원)되는 대로 총균수, 살모넬라균, 대장균에 대해 연간 1,500건의 검사를 실시하고 예냉시설, 작업장 바닥, 경매장등에 대한 위생검사도 강화해 나감.